

#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 2012. 2. 29

발 의 자 : 오진아위원 외 6 인

## 1. 제안이유

능력 있는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강화하고자 거주지 제한을 서울특별시로 확대하고 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검사위원의 직무와 검사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유능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거주지 제한은 마포구에서 서울특별시로 확대함(안제2조제1항)
- 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전직공무원과 금융기관 감사 등에 한정하던 것을 그 밖의 재무관리분야의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도 검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함(안제2조제2항)
- 다. 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안제3조)
  -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안제3조제1항, 제2항)
  - 결원 시 선임방법 및 절차(안제3조제3항)
- 라. 검사위원을 대표할 대표위원의 선임 및 직무에 대하여 명시함(안제4조)
- 마. 검사위원의 당연 신분상실 규정과 의회 의결로서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함(안제5조)
- 바. 검사위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제6조)
  - 검사할 사항과 방법 명시(안제6조제1항)
  - 감사의견서 작성 시 소수의견을 명시하고 검사위원 전원의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함(안제6조제3항, 제4항)
  - 검사위원의 신분을 연말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결산검사 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자문할 경우 응하도록 함(안제6조5항)
- 사.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에도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함(안제7조)
- 아. 검사위원이 의회 의결로 해임된 경우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여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제8조)

- 자. 구청장과 금고의 책임자는 결산검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안제9조)
- 차.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안제10조)
  - 결산기간 종료 후에 일괄 지급(안제10조제1항)
  - 수당 및 여비 지급은 결산검사 개시일로부터 감사의견서 제출일까지 지급(안제10조제2항)
- 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제11조)

### 3. 관련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134조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 다. 지방재정법 제51조부터 제53조의2까지
- 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3조의2까지

### 4. 개정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 : 별도 추가되는 예산 없음

### 6. 기타사항 :

- 가. 입법예고 : 2012. 2. 29 ~ 3. 5 ( 의견없음 )
- 나. 관계부서 협의 : 재무과,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 ( 의견없음 )
- 가.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나. 관계법령 :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원회"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하고, 이 중 1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선임방법) ① 검사위원회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기간 중에 선임된 감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즉시 선임하여야 하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선임된 감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대표위원) ① 감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감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감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의회는 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세를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

3.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4. 그 밖의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③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해임은 의회의 의결로 한다.

제6조(감사위원의 직무) ① 감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51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의 사항을 검사한다.

② 감사위원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까지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결산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감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모든 감사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의견서 작성 시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감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수의견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결산검사 업무는 감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감사위원의 신분은 해당 연도 말까지 존속하고, 감사위원회는 결산검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자문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회에 대한 제재) ① 감사위원이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의장은 감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결산검사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9조(결산검사 협조) ①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감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보조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대표위원은 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할 사람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감사위원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 종료 후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은 실제로 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감사의 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감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의원이 아닌 감사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준용해서 실비로 지급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 호

# 위 축 장

성 명

귀하를       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였기에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 회 의 장   인

# 【 관 계 법 령 】

## 지 방 자 치 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시행 2011.10.15] [대통령령 제23222호, 2011.10.14, 일부개정]

### 제5장 재무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2.2.5] [법률 제10991호, 2011.8.4, 일부개정]

### 제4장 결산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1. 세입
  - 가. 세입예산액
  - 나. 징수결정액
  - 다. 수납액
  - 라. 불납결손액(不納缺損額)
  - 마. 미수납액(未收納額)
2. 세출
  - 가. 세출예산액
  - 나. 전년도 이월액
  - 다. 예비비 사용액
  - 라. 전용 등 증감액
  - 마.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 바. 예산현액(豫算現額)
  - 사. 지출액
  -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 자. 불용액(不用額)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에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2.2.5] [대통령령 제23573호, 2012.1.31, 일부개정]

### 제4장 결산

제59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제62조(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는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부채·순자산의 인식
2. 수익과 비용의 인식
3. 자산과 부채의 평가
4. 재무보고서의 작성기준
5. 재무제표의 양식
6. 그 밖에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재무보고서에는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및 필수보충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보고서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그 밖에 검토의견의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1.9.6]